

◆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4-1622호

상도15구역(상도동 279번지 일대)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(안) 공람·공고

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279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(안)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·공고하며,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우리구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4년 8월 29일
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

1. 공람기간 : 2024. 8. 29. ~ 2024. 9. 29.(31일간)
2. 공람장소 : 동작구청 본관 2층 도시정비1과(☎02-820-9816)
3. 공람사유 : 상도1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(안)
4.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계획

구분	정비구역 명칭	위치	면적(㎡)	비고
신설	상도동 279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	동작구 상도동 279번지 일원	141,286.8	-

5. 관계도서 : 생략(공람장소에 비치)
6. 의견제출 :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상도15구역(상도동 279번지 일대)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(안)

1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(안)
 1. 용도지역 결정(변경)(안)
 - 가. 용도지역 결정(변경)(안) 조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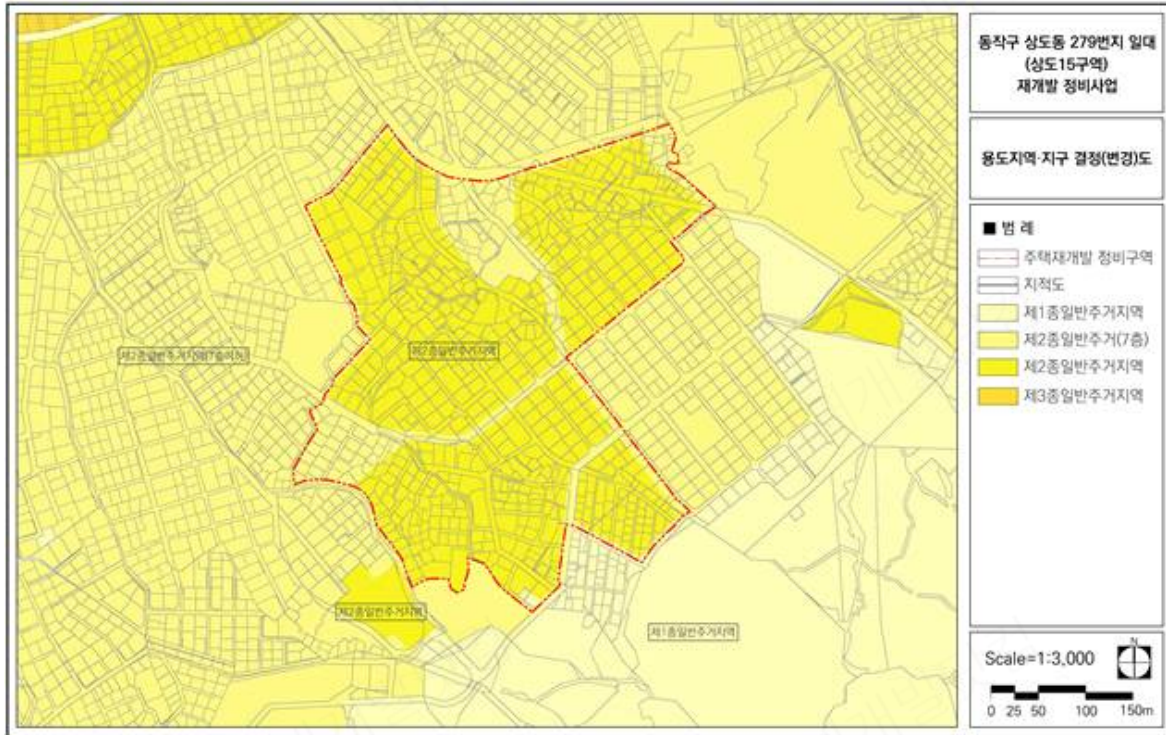
구분		면적(㎡)			구성비(%)	비고
		기정	변경	변경후		
합계		141,286.8	-	141,286.8	100.0	-
주거 지역	제1종일반주거지역	6,854.0	감) 6,051.6	618.6	0.4	-
	제2종일반주거지역(7층이하)	134,432.8	감) 113,665.8	20,767.2	14.7	-
	제2종일반주거지역	-	증) 119,901.0	119,901.0	84.9	-

■ 변경(안) 사유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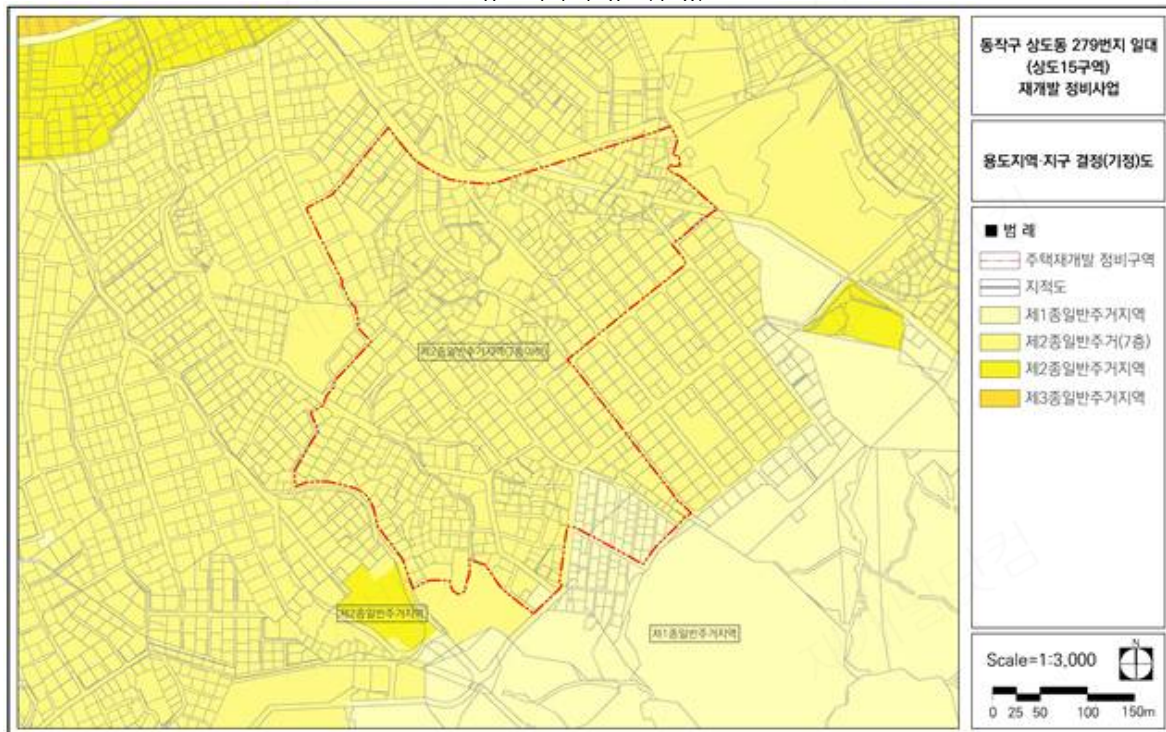
구분	위치	용도지역		면적(㎡)	변경사유
		기정	변경		
공동주택 (획지1)	동작구 상도동 279번지 일원	제1종 일반주거지역, 제2종 일반주거지역 (7층 이하)	제2종 일반주거지역	119,901.0	상도동 279번지 일대 정비구역 내 공동주택용지는 주변 지역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계획

나. 용도지구 결정(변경)(안) : 해당없음

용도지역 결정도(기정)



용도지역 결정도(변경)



2.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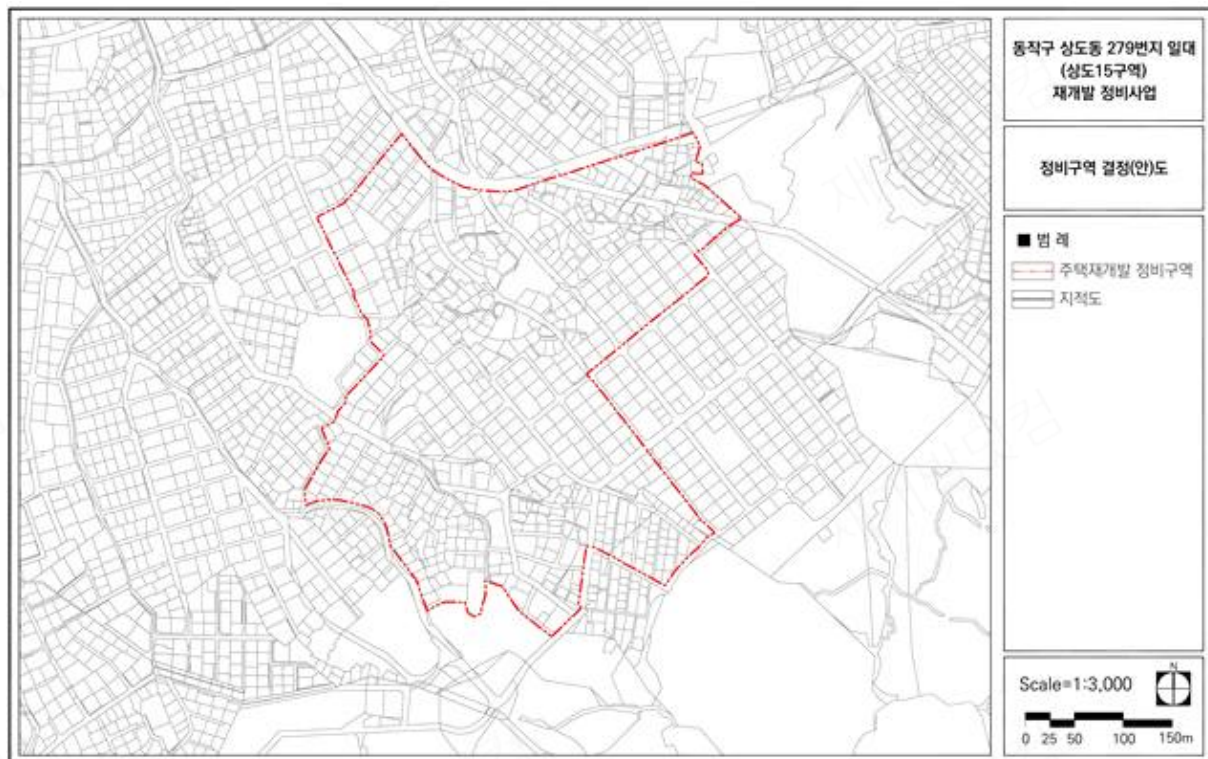
1. 용도지역·지구 결정(변경)(안) 조서

구분	정비구역 명칭	위치	면적(㎡)			비고
			기정	변경	변경후	
신설	상도동 279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	동작구 상도동 279번지 일원	-	증) 141,286.8	141,286.8	-

■ 변경(안) 사유서

구분	정비구역 명칭	내용	사유	비고
신설	상도동 279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	정비구역 지정	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을 통한 토지이용 효율의 극대화 및 주거환경 개선	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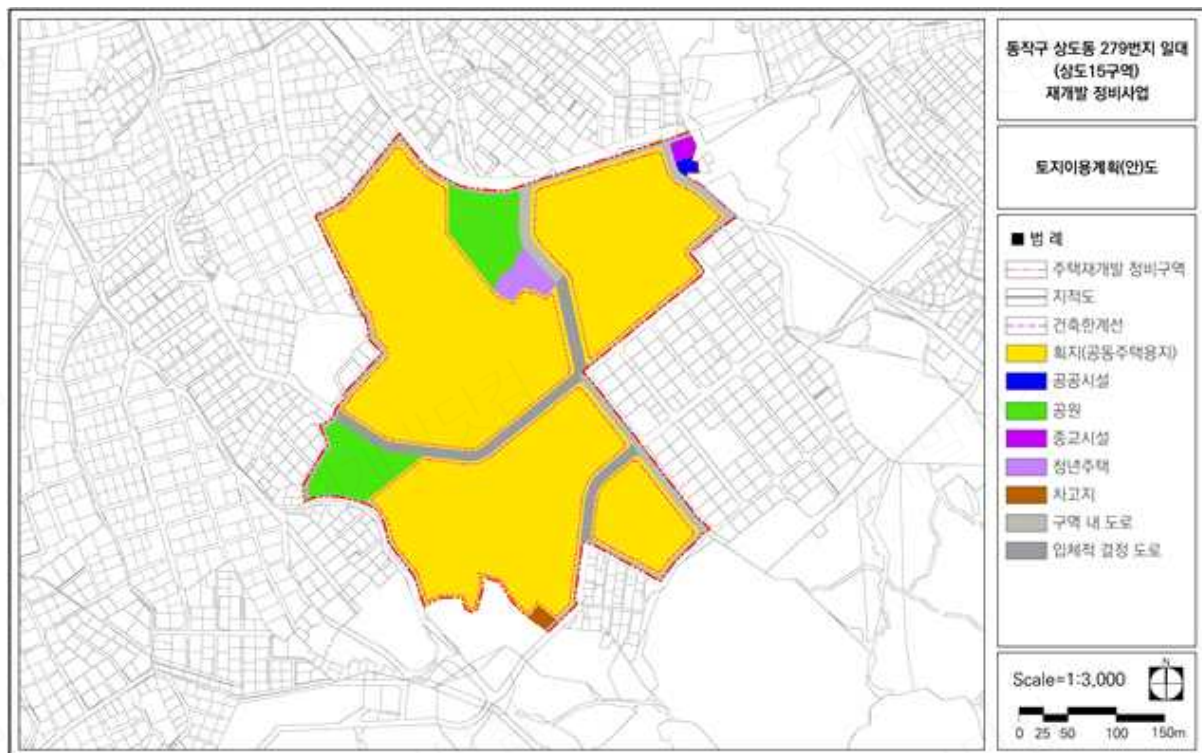
정비구역 결정도(안)



2. 토지이용계획(안)

구분	명칭	면적(㎡)			구성비(%)	비고
		기정	변경	변경후		
합계		-	증) 141,286.8	141,286.8	100.0	-
정비 기반시설 등	소계	-	증) 18,820.5	18,820.5	13.3	-
	도로	-	증) 8,205.7	8,205.7	5.8	-
	문화공원	-	증) 5,400.0	5,400.0	3.8	-
	소공원	-	증) 4,920.0	4,920.0	3.5	-
	공공시설	-	증) 294.8	294.8	0.2	-
획지	소계	-	증) 122,466.3	122,466.3	86.7	-
	획지1	-	증) 119,901.0	119,901.0	84.9	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
	획지2	-	증) 504.0	504.0	0.4	종교시설
	획지3	-	증) 344.1	344.1	0.2	차고지
	획지4	-	증) 1,717.3	1,717.3	1.2	청년주택

토지이용계획도(안)



3. 도시계획시설 결정(변경)(안) 조서

가. 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규모				기능	연장 (m)	기점	종점	사용 형태	주요 경과지	최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(m)								
기정	중로	3	37	12	국지도로	1,030 (330)	상도동 384-170	상도동 207-73	일반도로	-	-	-
변경	중로	3	37	12~20	국지도로	1,030 (330)	상도동 384-170	상도동 207-73	일반도로	-	-	-
기정	소로	2	-	8	국지도로	330 (190)	상도동 264-236	상도동 279-370	일반도로	-	-	-
변경	소로	2	(1)	8	국지도로	330 (190)	상도동 264-236	상도동 산65-179	일반도로	-	-	-
기정	소로	2	-	8	국지도로	221	상도동 313-5	상도동 283-215	일반도로	-	-	-
변경	소로	1	(1)	10	국지도로	221	상도동 283-64	상도동 283-215	일반도로	-	-	-
폐지	소로	3	-	4~6	-	210	-	-	일반도로	-	-	-
폐지	기타	-	-	4	-	310	-	-	일반도로	-	-	-
폐지	기타	-	-	4	-	670	-	-	일반도로	-	-	-
폐지	기타	-	-	4	-	175	-	-	일반도로	-	-	-
폐지	기타	-	-	4	-	150	-	-	일반도로	-	-	-

■ 결정(변경)(안) 사유서

구분	변경전 도로명	변경후 도로명	결정(변경) 내용	결정(변경) 사유
변경	중로3-37	중로3-37	B:12~20m, L:1,030m	· 개발에 따른 원활한 교통체계를 위한 일부 구간 도로 확폭
변경	소로2-	소로2-(1)	B:8m, L:330m	· 주변사업(상도11) 도로체계와의 정합성 유지, 도로선형 변경
변경	소로2-	소로1-(1)	B:10m, L:221m	· 개발에 따른 원활한 교통체계를 위한 일부 구간 도로 확폭
폐지	소로3	-	도로 폐지	·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수립을 위해 저이용 도로 폐지
폐지	기타	-	도로 폐지	·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수립을 위해 저이용 도로 폐지
폐지	기타	-	도로 폐지	·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수립을 위해 저이용 도로 폐지
폐지	기타	-	도로 폐지	·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수립을 위해 저이용 도로 폐지
폐지	기타	-	도로 폐지	·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수립을 위해 저이용 도로 폐지

나. 도시계획시설(공원) 결정(변경)(안)

구분	도면 표시번호	시설명	위치	면적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폐지	-	어린이공원	상도동 380-2	410.5	감) 410.5	-	-	-
폐지	-	어린이공원	상도동 264-156	192.0	감) 192.0	-	-	-
폐지	-	어린이공원	상도동 264-154	112.0	감) 112.0	-	-	-
신설	-	공원1	상도동 261-5	-	증) 5,200.0	5,200.0	-	-
신설	-	공원2	상도동 288-15	-	증) 4,820.0	4,820.0	-	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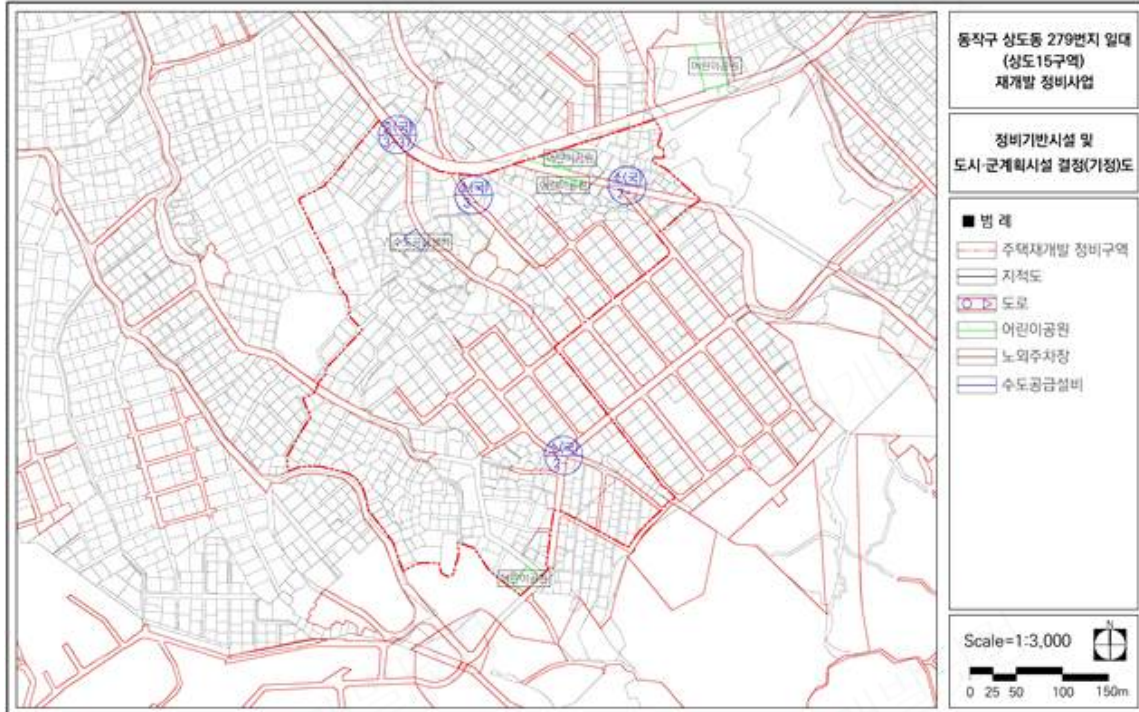
■ 결정(변경)(안) 사유서

도면표시번호	시설명	결정(변경) 내용	결정(변경) 사유
-	공원1	공원 (신설) - 증) 5,200.0㎡	· 대상지 내 문화공원을 결정하여 주민휴게공간 조성, 공원 내 시설로 체육시설 등을 조성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
	공원2	공원 (신설) - 증) 4,820.㎡	· 대상지 내 소공원을 결정하여 주민휴게공간 조성 및 지하 공영주차장 중복결정으로 주변 저층주거지 주차수요 충족

다. 도시계획시설(공공시설) 결정(변경)(안)

구분	도면 표시번호	시설명	위치	면적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폐지	-	수도공급설비	상도동 274-19	277.0	감) 277.0	-	-	-
신설	-	수도공급설비	상도동 237-13	-	증) 294.8	294.8	-	-
신설	-	공공체육시설	상도동 261-5	-	증) 연면적 7,500	연면적 7,500	-	공원1(문화공원) 내 지하 중복결정
신설	-	지하 공영주차장	상도동 288-15	-	증) 연면적 4,000	연면적 4,000	-	공원2(소공원) 내 지하 중복결정

도시계획시설 결정도(기정)



도시계획시설 결정도(변경)



4.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(안)

구분	시설의 종류	위치	면적 (㎡)			비고
			기정	변경	변경후	
공동 이용시설	경로당	상도동 279번지 일대	-	증) 500.0	500.0	-
	어린이 놀이터		-	증) 3,800.0	3,800.0	
	어린이 보육시설		-	증) 800.0	800.0	
	작은도서관		-	증) 400.0	400.0	
	주민운동(공동)시설		-	증) 2,200.0	2,200.0	
	다함께 돌봄센터		-	증) 900.0	900.0	
	계		-	-	8,600.0	
부대복리 시설	경비실	상도동 279번지 일대	-	증) 80.0	80.0	
	관리사무소		-	증) 170.0	170.0	
	통신실		-	증) 50.0	50.0	
	계		-	-	300.0	

5.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

결정구분	구역구분		가구 또는 획지 구분		위치	정비개량계획(동)					비고
	명칭	면적(㎡)	명칭	면적(㎡)		계	존치	개수	철거후 신축	철거이주	
신설	상도동 279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	141,286.8	획지	122,466.3	동작구 상도동 279번지 일원	589	1	-	585	3	-

6. 건축시설계획

가. 획지 및 주택규모 등에 관한 계획

결정 구분	구역구분		가구 또는 획지 구분		위치	주된용도	건폐율 (%)	용적률 (%)	높이(m) 최고층수							
	명칭	면적(㎡)	명칭	면적(㎡)												
신설	상도동 279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	141,286 .8	획지	119,901.0	동작구 상도동 279번지 일원	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	60 이하	기준 208.0 허용 218.5 상한 250이하	105m이하/ 최고 35층이하							
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					· 주택규모별 건설 비율 - 세대 수 : 3,204세대(분양 2,649세대, 임대 555세대) ※ 국민주택규모 주택건설에 따른 증가 세대수 : 212세대(분양 106세대, 임대 106세대)											
					구분(전용면적)		기 준		세대수(세대)		비고					
					합계		-		3,204(100.0%)		-					
					공동 주택	60㎡이하		총 건립세대수의 80%이상		1,720(53.7%)		-				
						60㎡~85㎡이하				1,264(39.4%)		-				
						85㎡초과		총 건립세대수의 20%미만		220(6.9%)		-				
					· 정비계획 용적률에 대한 임대 규모별 건설 비율(국민주택규모 주택 증가분은 제외) - 임대주택 건설계획 : 총 세대수의 15.0%					구분(전용면적)		기 준		세대수(세대)		비고
										합계		-		449(100.0%)		15.0%
										40㎡이하		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% 이상		222(49.4%)		-
										40㎡~50㎡이하		-		-		-
50㎡~60㎡이하		-		227(50.6%)						-						
60㎡이상		-		-						-						
심의완화사항										· 특별건축구역의 지정(건축법 제69조) · 용적률(건축법 제56조) 제외 :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 주민공동시설 중 개방형 시설 ·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(건축법 제61조)						
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					· 성대로 변(대상지 북측) :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m 이격 · 성대로10길 변(대상지 중앙) :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m 이격 · 그 외 :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이격											
기타 계획	입체적 보행공간		· 단지 내 소공원, 문화공원 및 체육시설, 국사봉 등산로 출입구, 성대로 주요 보행동선을 연결하는 보행축을 계획하고 단차를 활용하여 입체적 보행로와 차도를 분리하여 계획													

■ 결정(변경)(안) 사유서

도면표시번호	시설명	결정(변경) 내용	결정(변경) 사유
-	수도공급설비	수도공급설비 (신설) - 증) 294.8㎡	· 대상지 내 기존 가압장부지 이전설치
-	공공체육시설	지하 공공체육시설 (신설) - 증) (연면적) 7,500.㎡	· 대상지 문화공원 내 지하 공공체육시설 중복결정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
-	지하 공영주차장	지하 공영주차장 (신설) - 증) (연면적) 4,000.㎡	· 대상지 소공원 내 지하 공영주차장 중복결정으로 주변 저층주거지 주차수요 충족

라. 도시계획시설(도로) 입체결정(변경)(안)

구분	도면 표시번호	시설명	위치	면적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신설	중(국) 3-(1)	도로	상도동 260-12	-	증) 1,198.0	1,198.0	-	12m 도로
신설	소(국) 2-(3)	도로	상도동 292-56	-	증) 2,860.0	2,860.0	-	10m 도로
신설	소(국) 1-(1)	도로	상도동 283-59	-	증) 1,358.0	1,358.0	-	10m 도로

■ 결정(변경)(안) 사유서

도면표시번호	시설명	결정(변경) 내용	결정(변경) 사유
중(국) 3-(1)	도로	도로 (신설) - 중) 1,198.0 (12m 도로)	· 대상지 원활한 차량 동선 통행을 고려하여 지상권 설정
소(국) 2-(3)	도로	도로 (신설) - 중) 2,860.0 (10m 도로)	· 대상지 원활한 차량 동선 통행을 고려하여 지상권 설정
소(국) 1-(1)	도로	도로 (신설) - 중) 2,860.0 (10m 도로)	· 대상지 원활한 차량 동선 통행을 고려하여 지상권 설정

나. 용적률 계획

[illegible]

다. 공공시설 기부채납 계획

구분	시설명	위치	면적(㎡)	면적(㎡)		관리청	비고
			기정	대지면적(토지지분)	연면적(건축물환산면적)		
신설	문화공원	상도동 261-5	-	증) 5,400.0	-	동작구	-
신설	소공원	상도동 288-15	-	증) 4,920.0	-	동작구	-
신설	수도공급설비	상도동 237-13	-	증) 294.8	294.8(220.66)	남부수도사업소	-
신설	공공체육시설	상도동 261-5	-	-	7,500.0(3,738.8)	동작구	-
신설	지하 공영주차장	상도동 288-15	-	-	4,000.0(1,801.5)	동작구	-
신설	도로	-	-	증) 8,205.7	-	동작구	-

7. 환경보전,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및 환경성 검토결과

가.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

구분	계획내용	비고
도시경관	- 국사봉 경관 및 저층주거지 등 스카이라인이 조화되는 높이계획 수립 - 종합적인 분석으로 주변지역에 대한 조화로운 경관형성유도	-
환경보전	- 환경성 검토를 통하여 정비사업으로 인한 환경저해요소를 검토하여 환경영향 저감방안 마련 - 부득이한 법면 발생시 경계부에 녹화 및 조경처리 - 주차시설을 최대한 지하에 설치하여 지상녹화를 통한 친환경적 주거지 조성 - 조경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자연친화적인 단지계획을 수립 ※ 공사시 저감 방안(세부계획 일부) - 비산먼지의 발생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세륜·세차시설, 방진망설치, 사업대상 지내 살수 실시, 풍속에 따른 공사 진행여부 판단 등 적절한 저감대책을 현장의 여건에 맞게 단계적으로 수립·시행토록 할 계획임	-
재난방지	- 구역 내 화재 발생을 대비한 방화계획은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리 법규를 준수하여 종합적 방재계획 수립 - 화재시 소방도로 기능수행이 가능하도록 진입로 및 내부동선체계 구축 도모 - 인화성 건축내장재 사용을 규제하고 사업완료 후 지속적으로 관리	-

8. 정비사업 시행계획

구분	시행방법	시행예정시기	사업시행(예정)자	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	비고
신설	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(관리처분계획에 의함)	정비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	(가칭) 상도1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조합	- 현황세대수 : 1,192세대 - 계획세대수 : 3,198세대 - 증가세대수 : 2,006세대	-

9.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

구분	계획내용	비고
교육환경 보호계획	• 소음진동규제법 제23조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·진동을 규제 • 교육시설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 등에 지장을 초래하는 시설의 설치를 지양함 • 공사시 교육환경 장애요소 (소음·진동·먼지 등)의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 • 교육시설 이용시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계획 - 보행자도로에는 안전횡스를 설치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겠음 - 학교 주변 도로에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여 차량의 속도를 줄이도록 하겠음 • 조망 및 일조는 조망에 장애가 없도록 계획하겠으며, 일조는 동지날을 기준으로 일조기준에 영향이 없도록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교육환경평가 대상일 경우에는 교육환경평가를 받도록 하겠음 • 해당 관할 교육청의 협의결과를 준수토록 계획	-

10.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

가. 정비구역의 주택현황

1) 건축물 동수

구역 내 건축물 동수			구역 내 건축물 동수		
계	주거용건축물	비주거용 건축물	계	유허가	무허가
589	568	21	589	589	-

2) 거주현황

유형별 주택 호수	거주 가구수			구역 내 거주 인구수			비고
	소 계	가옥주	세입자	소 계	가옥주	세입자	
계	2,572	1,258	1,314	-	-	-	-
단독주택	-	-	-	-	-	-	-
공동주택	-	-	-	-	-	-	-

3) 규모별, 유형별 거주현황

구역 내 거주 주택(건축물) 규모					비고
구분	소계	60㎡미만	60이상 ~ 85㎡미만	85㎡이상	
계	578	199	164	215	-
주거용	567	198	164	205	-
비주거용	11	1	-	10	-

가. 정비사업으로 인해 새로 건축되는 주택 현황

구분	계	조합원분양	일반분양	임대주택	비고
계	3,204	2,100	549	555	-
60㎡이하	1,720	940	251	529	-
60㎡~85㎡이하	1,264	940	298	26	-
85㎡초과	220	220	-	-	-

11.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

구분	가구	면적(㎡)	획지		비고
			위치	면적(㎡)	
신설	획지1	119,901.0	동작구 상도동 279번지 일원	119,901.0	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
신설	획지2	504.0	동작구 상도동 237-5번지 일원	504.0	종교시설
신설	획지3	344.1	동작구 상도동 380-2번지 일원	344.1	차고지
신설	획지4	1,717.3	동작구 상도동 275번지 일원	1,717.3	청년주택

12. 임대주택 건설 계획

가. 임대주택 건설 계획

계획기준	- 임대주택 건설 : 주택 전체 세대수(법적상한 증가분 제외)의 15% 또는 연면적의 10% -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(법적상한 증가분 제외)의 30% 이상 또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% 이상 : 전용면적 40㎡이하		
산출근거	- 전체세대수(법적상한 증가분 제외) : 2,992세대 = 3,204세대 - 212세대(법적상한 증가분) - 재개발임대주택 건설계획 : 449세대 - 상한용적률에 해당하는 계획세대 수(법적상한 증가분 제외)의 15%이상 : 2,992세대 × 15% = 448.80세대 ∴ 449세대 계획 > 448.80세대 - 전용면적 40㎡이하 임대주택 세대수 :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(법적상한 증가분 제외)의 30% 이상 또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% 이상 : 222세대 449세대의 30% 이상 : 449 × 30% = 134.7세대 2,992세대의 5% 이상 : 2,992 × 5% = 149.6세대 ∴ 222세대 계획 > 134.7세대 또는 149.6세대		
건립규모	세대 수	전체 비율(%)	임대주택 비율(%)
합계	449	15%	100.0
전용 39㎡	222	7.4	49.4
전용 48㎡	-	-	-
전용 59㎡	227	7.6	50.6
전용 84㎡	-	-	-

나. 법적 상한용적률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

구 분		산 정 내 용					비 고	
재개발 국민주택 의무면적	용적률 증가분	• 15.25%(249.95% - 234.7%)					-	
	증가 연면적	• 15.25% x 119,901.0㎡(대지면적) = 18,284.90㎡					-	
	의무면적	• 9,142.45㎡ 이상(18,284.90㎡ x 0.5) • 국민주택 공급면적 : 9,239.21㎡ > 9,142.45㎡					기준이상 확보	
재개발 국민주택 확보계획		건립위치	부지면적(㎡)	세대수		세대규모(공급㎡)	연면적(㎡)	-
		상도동 279번지 일대	119,901.0	계	106	-	9,239.21	-
				59㎡	80	59형(79.07)	6,325.44	-
				84㎡	26	84형(112.07)	29,13.21	-

13.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

- 정비구역 내 녹지 및 보호수 등 보존가치가 있는 수목은 없으며, 사업시행 시 재활용 가능한 수목과 수형, 재활용 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수반하겠음
- 재활용이 가능한 수목은 대상지 북측과 서측 조성되는 공원 내 이식하도록 하겠음

14. 환경성 검토 결과

검토항목	목표기준	준수 여부	현황 및 검토결과	계획에의 반영사항	비고
1. 비오톱	비오톱 보전 등급향상	○	비오톱유형평가등급 현재 5등급 → 목표 4·5등급	녹지공간 확보로 비오톱 개선 및 보전가치 상승	-
2. 생태 네트워크	녹지·수생태 연결성 확보	○	현재 대상지 내 녹지 미분포 녹지평가지표1 달성	소공원 조성 녹지계획 수립	-
3. 토지이용	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	○	노후·불량주택 밀집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 여건 열악	주변 개발여건 및 입지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공간계획 수립	-
4. 토양	토양오염 최소화	○	토양오염유발시설 미분포 토양오염우려기준(1지역) 만족	폐유 보관소 설치 및 전문처리업체 를 통한 위탁처리	-
5. 지형·지질	지형·지질 변동 최소화	○	평균표고 58m 평균경사 8.1°	단차발생 최소화로 지형순응형 계 획 수립	-
6. 물순환(수리·수문)	생태면적률 30%	○	기존 생태면적률 불량 생태면적률 30% 이상 확보	자연 및 인공지반녹지 조성을 통한 생태면적률 상향 계획	-
7. 수질	수질 등급 유지 및 오염 최소화	○	공사 시 토사유출 발생 운영 시 오수 발생	가배수로 및 침사지 설치 서남물재생센터로 유입·처리	-
8. 바람	바람길 확보	○	바람환경공간 유형분석(단독주택지와 불투수포장비율이 낮은 시가지)	녹지 및 보행통로를 고려한 배치계 획 수립으로 바람길 확보	-
9. 열	열환경 영향 최소화	○	열환경공간 유형분석(불투수포장비율 이 높은 4층 이하 주거지)	공원 및 녹지 조성으로 Cooling Zone 확보 및 열섬효과 감소	-
10. 대기질·미세먼지	대기오염 최소화	○	공사 시 비산먼지 발생 운영 시 대기오염물질 영향	살수차 운행 및 방진망 설치 등 비 산먼지 저감방안 수립	-
11. 온실가스	온실가스저감	○	공사 시 및 운영 시 온실가스 배출	고효율 건설장비 사용 등 신·재생에너지 적용 검토	-
12. 친환경적 자원순환	폐기물발생량 최소화	○	건설폐기물 및 폐유 등 발생	관련 규정에 의거 적정 처리 전문 처리업체를 통한 위탁처리	-
13. 에너지	에너지자립률 상향계획 수립	○	과다한 에너지소비 유발 없음	신·재생에너지 공급률 서울특별시 기준 준수	-
14. 소음·진동	소음·진동 최소화	○	공사에 의한 소음·진동 발생	공사 시 가설방음판넬 설치	-
15. 경 관	스카이라인 보전 등	○	주변 건물간 조화로운 입면계획 필요	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 야간경관 가이드라인 적용	-
16. 휴식 및 여가공간	휴식·여가공간 최대 확보	○	대상지 외 공원 인접	주변공원과 연계하여 공원 및 녹지 조성	-
17. 일 조	일조 침해 최소화	○	사업대상지 인근 공동주택 및 교육시 설 등에 일조영향	건축계획 관련 규정 준수 및 일조 민원 해소대책 적극 강구	-
18. 보행친화공간	보행자전용 도로계획 수립	○	인도 및 차도 혼재로 보행공간 미확보	공공보행통로 계획 등 보행환경 개선	-
19. 인구	인구 고려한 계획수립	○	공사 시 영향 미미	주변 개발현황 및 장래 발전을 고 려한 인구 수용계획 수립	-

15.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

가. 정비계획 가이드라인

구분	가이드라인
정비구역계	· 2022년 12월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 구역계를 준용하되, 지역 현황을 고려해 구역계 조정 ※ 동작구 도시정비1과-9957 (2023.10.04.)
용도지역	· 제1종일반주거지역, 제2종일반주거지역(7층이하) → 제2종일반주거지역
공공시설 등	• 도로 -안전하고 편리한 보행 및 차량 소통을 위해 사업대상지 주변으로 보차가 구분된 순환도로체계 구성 · 성대로10길 : 6m → 12m(3차선) 확폭, 일부구간 입체적 결정 · 성대로8길, 국사봉1가길 : 4m → 8m(2차선) 확폭 · 국사봉1길 : 6m → 10m(3차선) 확폭, 일부구간 입체적 결정 · 성대로14길 : 6m → 8m(2차선) 확폭 · 성대로6가길, 양녕로23길 : 8m → 10m(2차선) 확폭, 일부구간 입체적 결정 -상도로와 장승배기로를 잇는 광역적 기반시설 정비를 위해 성대로 단절구간 연결 및 도로 확폭 · 성대로 : 12m~16m → 20m 확폭 ※ 2천세대 이상 주택단지 개발사업에 해당하므로 (『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』제25조 1항) 진입도로인 성대로의 폭 20m 이상 확보 필수, 향후 동작구청에서 개발사업 연계, 도시계획도로 지정 등을 통해 폭 20m 도로로 계획적 개발 유도 • 공원(2개소) -대상지 주변 저층주거지와 공유할 수 있는 생활권공원 조성을 위해 대상지 북측과 서측으로 각 1개소 배치 • 공공시설 등 -공원 지하 체육시설 및 공영주차장, 수도공급설비(기존 가압장 이전) 등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시설 설치 -기존 국공립 어린이집, 경로당은 주택용지 내 주민공동이용시설로 설치 ※ 공공시설의 종류 및 규모는 정비계획 입안과정에서 관계부서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
용적률	• 기준용적률 188.0% 이하 (주택용지 내 제1종, 제2종(7층) 가중평균치) • 허용용적률 198.5% 이하 (주택용지 내 제1종, 제2종(7층) 가중평균치) • 상한용적률(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상한용적률 및 「도시정비법」에 따른 법적상한용적률) - 250% 이하 ※ 용적률 체계는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(주택정비형)을 따름
주택공급	• 계획세대수 3,200세대 내외 ※ 주택공급계획은 정비계획 입안과정에서 주민 수요조사를 통해 변경 가능 ※ 공공주택은 주택정책실 협의를 통해 세대수 및 평형규모 결정

나. 건축계획 가이드라인

구분	가이드라인
층수/높이	- 국사봉 경관 및 저층주거지와 스카이라인과 조화를 고려하고, 창의혁신 디자인을 적용할 경우 유연하게 높이계획을 적용 -신속통합기획 시뮬레이션(안) : 최고층수 35층 내외 - 대상지 경계부는 저층주거지 위압감 최소화를 위해 15층 내외 중저층으로 배치하고 대상지 중심부로 35층 내외 고층 주동 배치
경관계획	「서울시 경관계획」의 원칙을 준수, 국사봉으로의 열린 시야를 위해 통경축 확보
건축한계선	- 가로변 개방감 확보 및 가로활성화를 위한 건축한계선 지정 -성대로, 성대로10길 변 : 주요 보행동선 및 통경축으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m 이상 -그 외 :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3m 이상
보행 동선계획	- 입체적 보행공간 조성 -단지 내 소공원, 문화공원 및 체육시설, 국사봉 등산로 출입구, 성대로 주요 보행동선을 연결하는 보행축을 계획하고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과 연계 - 일부 보행로는 단차를 활용하여 입체적으로 부행로와 차도를 분리하여 계획
차량 진출입구 계획	- 획지①(주택용지) -주출입구 : 성대로10길 3개소 / 국사봉1길 2개소 -부출입구 : 성대로16길 1개소 - 획지②(문화공원) 내 체육시설 부속주차장 출입구 : 성대로10길 1개소 - 획지③(소공원) 내 지하공영주차장 출입구 : 국사봉1길 1개소 ※ 교통처리계획은 정비계획 지침도에 따르며, 향후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
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시설	- 가로활성화시설 배치구간(권장) -성대로~공원①(문화공원) 주변으로 상업활성화를 위해 가로대면형 근린생활시설 배치 -성대로10길변 생활가로 활성화를 위해 근린생활시설 및 공공시설 배치 - 주요 보행동선(공원②, 국사봉1길)을 따라 개방형 주민공동이용시설 배치(권장)

3.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

1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(변경)(안)

구분	정비구역 명칭	위치	면적(㎡)			비고
			기정	변경	변경후	
신설	상도동 279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	동작구 상도동 279번지 일원	-	증) 141,286.8	141,286.8	-

2.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

가. 용도지역·지구 결정(변경)(안) 조서

1) 용도지역 결정(변경)(안) 조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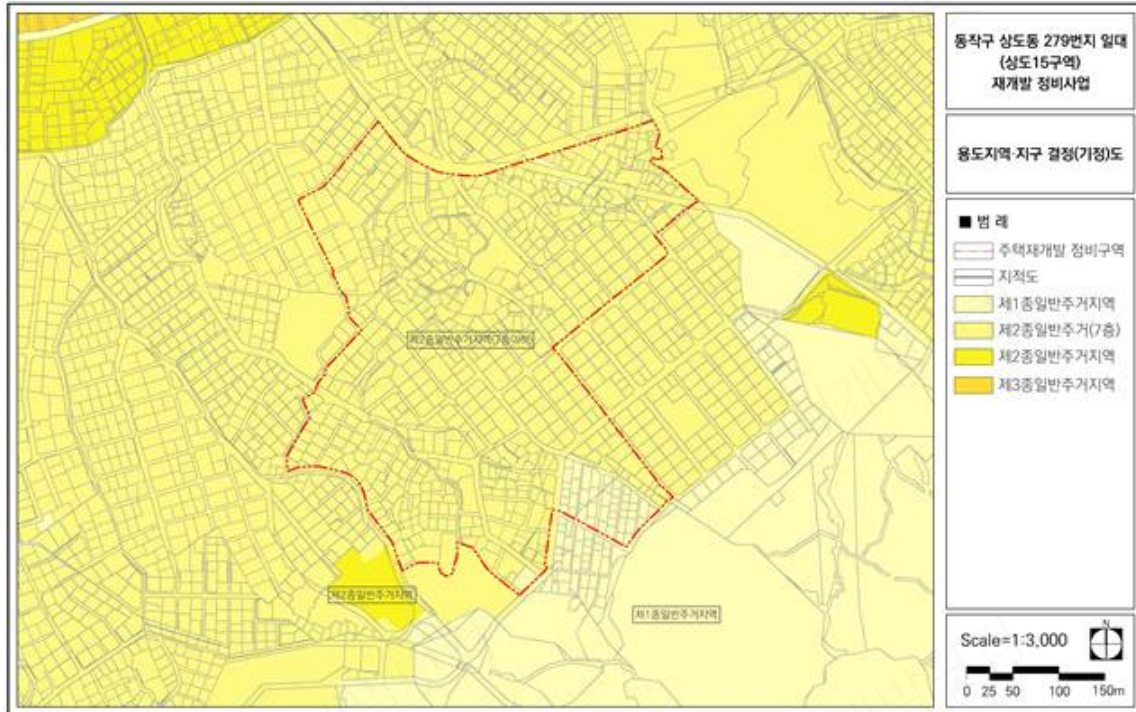
구분		면적(㎡)			구성비(%)	비고
		기정	변경	변경후		
합계		141,286.8	-	141,286.8	100.0	-
주거 지역	제1종일반주거지역	6,854.0	감) 6,051.6	618.6	0.4	-
	제2종일반주거지역(7층이하)	134,432.8	감) 113,665.8	20,767.2	14.7	-
	제2종일반주거지역	-	증) 119,901.0	119,901.0	84.9	-

■ 변경(안) 사유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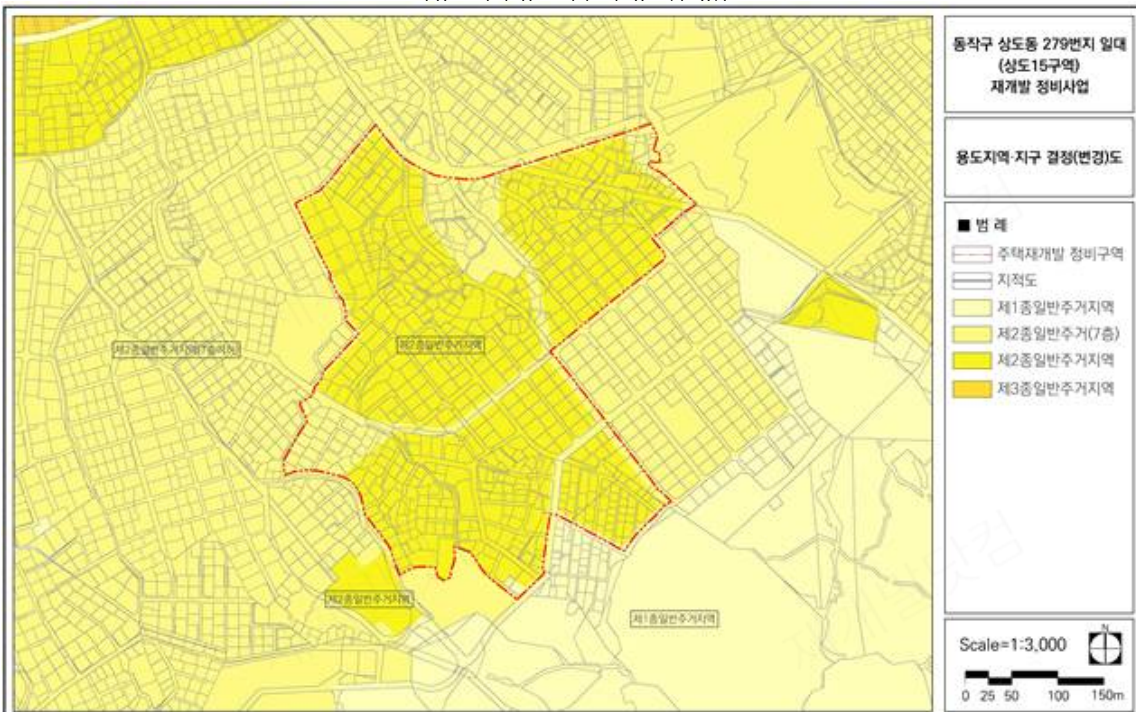
구분	위치	용도지역		면적(㎡)	변경사유
		기정	변경		
공동주택(획지1)	동작구 상도동 279번지 일원	제1종 일반주거지역, 제2종 일반주거지역(7층 이하)	제2종 일반주거지역	119,901.0	상도동 279번지 일대 정비구역 내 공동주택용지는 주변 지역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계획

나. 용도지구 결정(변경) 조서 : 해당사항 없음

[용도지역·용도지구 결정도(기정)]



[용도지역·용도지구 결정도(변경)]



3. 도시계획시설 결정(변경)(안) 조서

가. 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(변경)(안) 조서

구분	등급	구도 류별	번호	폭원(m)	기능	연장 (m)	기점	종점	사용 형태	주요 경과지	최초 결정일	비고
기정	중로	3	37	12	국지도 로	1,030 (330)	상도동 384-170	상도동 207-73	일반도로	-	-	-
변경	중로	3	37	12~20	국지도 로	1,030 (330)	상도동 384-170	상도동 207-73	일반도로	-	-	-
기정	소로	2	-	8	국지도 로	330 (190)	상도동 264-236	상도동 279-370	일반도로	-	-	-
변경	소로	2	(1)	8	국지도 로	330 (190)	상도동 264-236	상도동 산65-179	일반도로	-	-	-
기정	소로	2	-	8	국지도 로	221	상도동 313-5	상도동 283-215	일반도로	-	-	-
변경	소로	1	(1)	10	국지도 로	221	상도동 283-64	상도동 283-215	일반도로	-	-	-
폐지	소로	3	-	4~6	-	210	-	-	일반도로	-	-	-
폐지	기타	-	-	4	-	310	-	-	일반도로	-	-	-
폐지	기타	-	-	4	-	670	-	-	일반도로	-	-	-
폐지	기타	-	-	4	-	175	-	-	일반도로	-	-	-
폐지	기타	-	-	4	-	150	-	-	일반도로	-	-	-

■ 결정(변경)(안) 사유서

구분	변경전 도로명	변경후 도로명	결정(변경) 내용	결정(변경) 사유
변경	중로3-37	중로3-37	B:12~20m, L:1,030m	· 개발에 따른 원활한 교통체계를 위한 일부 구간 도로 확폭
변경	소로2-	소로2-(1)	B:8m, L:330m	· 주변사업(상도11) 도로체계와의 정합성 유지, 도로선형 변경
변경	소로2-	소로1-(1)	B:10m, L:221m	· 개발에 따른 원활한 교통체계를 위한 일부 구간 도로 확폭
폐지	소로3	-	도로 폐지	·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수립을 위해 저이용 도로 폐지
폐지	기타	-	도로 폐지	·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수립을 위해 저이용 도로 폐지
폐지	기타	-	도로 폐지	·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수립을 위해 저이용 도로 폐지
폐지	기타	-	도로 폐지	·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수립을 위해 저이용 도로 폐지
폐지	기타	-	도로 폐지	·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수립을 위해 저이용 도로 폐지

나. 도시계획시설(공원) 결정(변경)(안)

구분	도면 표시번호	시설명	위치	면적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폐지	-	어린이공원	상도동 380-2	410.5	감) 410.5	-	-	-
폐지	-	어린이공원	상도동 264-156	192.0	감) 192.0	-	-	-
폐지	-	어린이공원	상도동 264-154	112.0	감) 112.0	-	-	-
신설	-	공원1	상도동 261-5	-	증) 5,200.0	5,200.0	-	-
신설	-	공원2	상도동 288-15	-	증) 4,820.0	4,820.0	-	-

■ 결정(변경)(안) 사유서

도면표시번호	시설명	결정(변경) 내용	결정(변경) 사유
-	공원1	공원 (신설) - 증) 5,200.0㎡	· 대상지 내 문화공원을 결정하여 주민휴게공간 조성, 공원 내 시설로 체육시설 등을 조성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
	공원2	공원 (신설) - 증) 4,820.㎡	· 대상지 내 소공원을 결정하여 주민휴게공간 조성 및 지하 공용주차장 중복결정으로 주변 저층주거지 주차수요 충족

다. 도시계획시설(공공시설) 결정(변경)(안)

구분	도면 표시번호	시설명	위치	면적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폐지	-	수도공급설비	상도동 274-19	277.0	감) 277.0	-	-	-
신설	-	수도공급설비	상도동 237-13	-	증) 294.8	294.8	-	-
신설	-	공공체육시설	상도동 261-5	-	증) 연면적 7,500	연면적 7,500	-	공원1(문화공원) 내 지하 중복결정
신설	-	지하 공영주차장	상도동 288-15	-	증) 연면적 4,000	연면적 4,000	-	공원2(소공원) 내 지하 중복결정

■ 결정(변경)(안) 사유서

도면표시번호	시설명	결정(변경) 내용	결정(변경) 사유
-	수도공급설비	수도공급설비 (신설) - 증) 294.8㎡	· 대상지 내 기존 가압장부지 이전설치
-	공공체육시설	지하 공공체육시설 (신설) - 증) (연면적) 7,500.㎡	· 대상지 문화공원 내 지하 공공체육시설 중복결정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
-	지하 공영주차장	지하 공영주차장 (신설) - 증) (연면적) 4,000.㎡	· 대상지 소공원 내 지하 공영주차장 중복결정으로 주변 저층주거지 주차수요 충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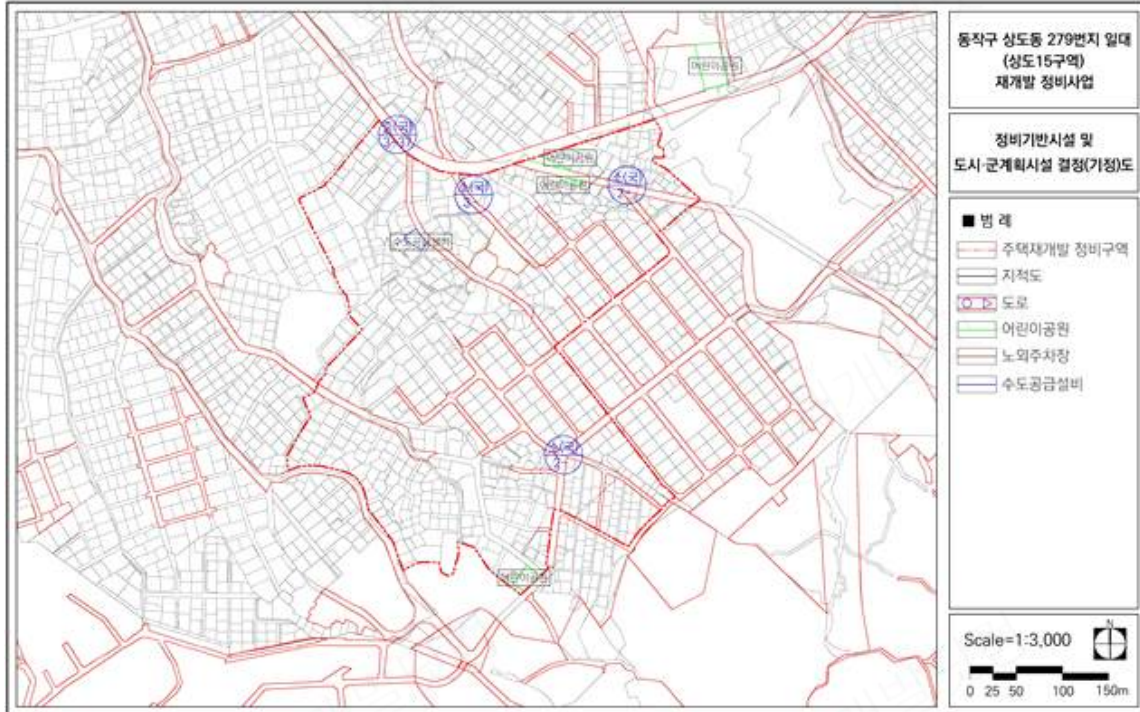
라. 도시계획시설(도로) 입체결정(변경)(안)

구분	도면 표시번호	시설명	위치	면적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신설	중(국) 3-(1)	도로	상도동 260-12	-	증) 1,198.0	1,198.0	-	12m 도로
신설	소(국) 2-(3)	도로	상도동 292-56	-	증) 2,860.0	2,860.0	-	10m 도로
신설	소(국) 1-(1)	도로	상도동 283-59	-	증) 1,358.0	1,358.0	-	10m 도로

■ 결정(변경)(안) 사유서

도면표시번호	시설명	결정(변경) 내용	결정(변경) 사유
중(국) 3-(1)	도로	도로 (신설) - 증) 1,198.0 (12m 도로)	· 대상지 원활한 차량 동선 통행을 고려하여 지상권 설정
소(국) 2-(3)	도로	도로 (신설) - 증) 2,860.0 (10m 도로)	· 대상지 원활한 차량 동선 통행을 고려하여 지상권 설정
소(국) 1-(1)	도로	도로 (신설) - 증) 2,860.0 (10m 도로)	· 대상지 원활한 차량 동선 통행을 고려하여 지상권 설정

도시계획시설 결정도(기정)



도시계획시설 결정도(변경)



4.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

가.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조서

구분	가구	면적(㎡)	획지		비고
			위치	면적(㎡)	
신설	획지1	119,901.0	동작구 상도동 279번지 일원	119,901.0	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
신설	획지2	504.0	동작구 상도동 237-5번지 일원	504.0	종교시설
신설	획지3	344.1	동작구 상도동 380-2번지 일원	344.1	차고지
신설	획지4	1,717.3	동작구 상도동 275번지 일원	1,717.3	청년주택

나. 건축물의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에 관한 결정조서

1)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

구분	가구	용도	비고
신설	획지1	·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	-
	획지2	·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 나목의 종교시설	-
	획지3	·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 아목의 차고 및 주차장	-
	획지4	·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	-

2) 건축물 개발밀도(건폐율, 용적률, 높이)

○ 건폐율 계획

구분	지역	건폐율	비고
신설	획지1	60% 이하	공동주택 사업부지
	획지2	60% 이하	종교부지
	획지3	60% 이하	차고지
	획지4	60% 이하	청년주택

○ 용적률 계획

구분	지역	기준용적률	허용용적률	상한용적률		비고
				상한용적률	예정법적 상한용적률	
신설	획지1	208%이하	218.5%이하	234.7% 이하	249.95% 이하	-
	획지2	170%이하	-	-	-	2종일반(7층이하) 용적률 적용
	획지2	170%이하	-	-	-	
	획지2	170%이하	-	-	-	

■ 허용 용적률 완화 사항

구분	인센티브			비고
	우수디자인	녹색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(에너지1등급, 녹색최우수등급)	신재생에너지 공급률	
신설	10.5%	-	-	총 10.5%

■ 상한 용적률 완화 사항

구분	용적률 완화	비고
	공공시설 기부채납	
신설	16.2%	-

○ 높이 계획

구분	지역	높이 기준	비고
신설	획지1	105m 이하 (35층 이하)	-
	획지2	용도지역별 높이기준 준용	-
	획지3	용도지역별 높이기준 준용	-
	획지4	용도지역별 높이기준 준용	-

다.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

구분	적용 위치	계획내용	비고
신설	성대로 변 : 5m	·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m 후퇴	-
	성대로10길 변 : 5m	·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m 후퇴	-
	그 외 : 3m	·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후퇴	-

라. 경관계획

1) 건축물 배치의 관한 계획

구분	적용 위치	계획 내용
건축물의 배치	공동주택 사업부지	· 저층주거 밀집지역 및 주변 개발사업지와의 높이를 고려한 영역별 주거유형 배치 - 단지 중앙부 : 고층 타워형 주동을 배치하고, 디자인 특화주동으로 계획 (권장) - 국사봉1길, 성대로10길 경계부 : 주변으로 열린 중저층 판상형 주동을 배치 · 테라스형 근생 및 중정형 주민공동시설의 지하 배치, 선큰광장, 데크주차장, 입체보행가로 등 지형의 단차를 활용한 계획을 적극적으로 도입 · 동서로 열린 주동 배치를 통해 단지 바람길을 조성, 쾌적한 단지 조성
보행환경	공동주택 사업부지	· 단지 내 단차 발생 시 옹벽 등 설치를 최소화하고, 보행 약자를 고려한 자연 경사 및 수직이동시설 설치 ·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위해 획지 간 입체적으로 연결하고 단차 최소화 - 주변보다 낮은 레벨의 도로 구간 상부를 활용 (입체적 결정도로 내) · 경계부에 면하여 지역에 열린 다양한 규모의 외부공간 계획
용도계획	공동주택 사업부지	· 성대로변으로 문화공원과 연계한 연도형 근린생활시설 배치 · 성대로10길변으로 생활가로 활성화를 위해 근린생활시설 및 공공시설 배치 (권장) · 공원②(소공원), 국사봉1길을 따라 개방형 주민공동시설 배치 (권장)

2) 건축물 형태 및 외관에 관한 계획

구분	적용 위치	계획 내용
입면계획	공동주택 아파트	· 다양한 저층부와 고층부 매스 계획을 통해 입면의 디자인을 특화하고 입체감을 부여하는 등 입면의 다양성을 높이는 계획 제시

3) 경관에 관한 계획

구분	적용 위치	계획 내용
경관	공동주택 아파트	· 국사봉까지 시각적으로 열린 경관확보를 위해 문화공원, 청년주택, 성대로10길 도로변을 따라 통경구간을 설정해 건축물 계획을 지양하고 열린 단지로 계획
스카이라인	공동주택 아파트	· 주변 중저층 밀집지역을 고려하여 단지 중앙에서 경계부 방향으로 지역경관 흐름을 이어주는 텐트형(▲) 스카이라인 계획 · 최고 층수 35층 이하 범위에서 리듬감 있는 주동 높이 계획

5. 관련도면 :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관계도서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2층 도시정비과(☎02-820-9816)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.

◆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4-1623호

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.

2024년 8월 29일
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

1 개정이유

- 가. 보건복지부 지자체 유사중복사업 정비 지침에 따른 장수수당 폐지에 따라 사회보장적 현물급여 '장수축하품' 신설을 통해 효문화 정책 확대 유지
- 나. 고령 노인의 위생관리 및 품위유지를 돕고자 '노인 이미용 지원' 신설, 초고령사회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 추진으로 노년기 삶의 질 향상
- 다. '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'에 따른 문구 및 띄어쓰기 수정
- 라. 상위법령 인용조문 및 별지 서식 수정

2. 주요내용

- 가. 장수수당 폐지에 따른 장수축하품 지급근거 신설, 지급대상 및 요건, 지급한도액, 지급방법 및 지급의 중지·반환 규정 정비(안 제2조, 제34조 ~ 제36조)
- 나. 노인 이미용 지원 신설, 지급대상 및 요건, 지급방법 등 규정 마련(안 제25조, 제37조)
- 다. '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'에 따른 문구 및 띄어쓰기 수정(안 제2조, 3조, 5조., 8조, 11조, 제13조, 제28조, 제29조, 제30조, 제33조, 제35조, 제36조)
- 라. 상위법령 인용조문 수정 (안 제2조, 제5조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[참조 : 어르신정책과장,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로 74, 3층 어르신정책과]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어르신정책과(전화 : 820-9560, FAX : 820-9832, E-mail : yoojuhye@dongjak.go.kr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 주소 및 전화번호
- 다. 그 밖의 필요한 의견사항

※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(<http://www.elis.go.kr>)에 게재되어 있습니다.

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·규칙심의회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정의는”을 “뜻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6호 중 “동작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에”를 “동작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의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“노인복지시설”이란 「노인복지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1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.

7. “장수축하품”이란 100세 이상 노인에게 대해 장수를 축하하기 위해 지원하는 일종의 물품을 말한다.

제3조 중 “노인복지문화증진”을 “노인복지문화 증진”으로, “본”을 “이”로 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법 제33조”를 “법 제23조의2, 제33조”로, “제39조”를 “제39조, 제39조의5, 제39조의19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내부운영규정”을 “내부 운영규정”으로 한다.

제8조제5항 중 “기타 공공요금 등을 포함 한다”를 “그 밖의 공공요금 등을 포함한다”로 한다.

제11조 중 “원상회복 하여야”를 “원상 회복하여야”로 한다.

제13조제2항 본문 중 “구 공보”를 “구보”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필요시”를 “필요 시”로 한다.

제5장 “노인관계기관”을 “노인관계기관 등 노인복지증진 지원”으로 한다.

제25조의 제목 “(보조금 지원)”을 “(지원내용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노인관계기관 및 구립노인종합복지관 등에서 다음”을 “다음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호를 제6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노인 이미용 지원

제28조제2항제2호 중 “허위”를 “거짓”으로 한다.

제29조 중 “우리의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효행을 통하여 고령화 사회에 어르신에 대한 경로효친과 효에 관한”을 “효에 대한”으로, “및”을 “제고와”로 한다.

제30조제2항 중 “필요시”를 “필요 시”로 한다.

제33조제5항 중 “관련공부”를 “관련 공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중 “비치하고”를 “갖추어 두고”로 한다.

제34조의 제목 “(노인장수수당 지원 등)”을 “(장수축하품 지급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노인장수수당(이하 “장수수당”이라 한다)”을 “장수축하품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“장수수당”을 “장수축하품”으로, “3년”을 “1년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장수축하품은 50만원 이내의 물품을 1회 지급할 수 있다.

제35조제1항 본문 중 “장수수당”을 “장수축하품”으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장수수당 지급대상자”를 “장수축하품 지급대상자”로, “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노인장수수당 지급”을 “장수축하품”으로, “자가(위임장 소지자를 말한다)”를 “자(위임장 소지자를 말한다)가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장수수당”을 “장수축하품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구청장은 장수축하품을 지급한 후 장수축하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 등을 통해 지급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.

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장수”를 “장수축하품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허위”를 “거짓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수당의 전액”을 “장수축하품 상당액”으로 한다.

제37조 및 제38조를 각각 제38조 및 제39조로 하고,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7조(노인 이미용 지원) 구청장은 지원기준일 현재 동작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노인에게 이미용비를 바우처 또는 이용권 등의 형태로 지원할 수 있으며, 지원 대상 노인의 연령 및 지원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. 다만, 시설입소자 또는 유사사업 지원 대상자는 제외할 수 있다.

별지 제3호 및 제4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3호 서식]

장수축하품 지급 신청서					
① 지급 대상자	성 명		생년월일		
	주 소	(전화 :)			
② 가족사항	본인과의 관 계	성 명	생년월일	동거여부	비고 (연락처)
③ 신청내용	「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수축하품 지급에 관한 조례」 제3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축하품 지급을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 청 인 : (서명 또는 인) (지급대상자와의 관계:) 연 락 처 : 동 작 구 청 장 귀하				
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					
본인은 장수축하품 신청을 위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 및 제42조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·초본 및 가족관계 등록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인(지급대상자) (서명 또는 인)					

[별지 제4호 서식]

장수축하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

일련 번호	지급대상자			신청 일자	지급 일자	축하품 수량여부	축하품 수량인	비 고 (연락처)
	성 명	생년월일	주 소					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 뜻은 -----.
1. “노인복지시설”이라 함은 「노인복지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1조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, 노인의료복지시설, 노인여가복지시설,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노인보호전문기관을 말하며 각 시설별 세부시설 기준은 법에서 정한 규정을 준용한다.	1. “노인복지시설”이란 「노인복지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1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.
2. ~ 5. (생략)	2. ~ 5. (현행과 같음)
6. “효도가정”이란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세대 이상이 서울특별시 동작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에 같은 주소지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을 말한다.	6. ----- 동작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의 -----.
<신설>	7. “장수축하품”이란 100세 이상 노인에 대해 장수를 축하하기 위해 지원하는 일정의 물품을 말한다.
제3조(구의 책무) 구는 노인의 사회 참여활동 확대 및 노인복지문화증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, 법, 그 밖의 법령 및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	제3조(구의 책무) ----- 노인복지문화 증진-----의 -----.
제5조(노인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) ① (생략)	제5조(노인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노인복지시설의 설치·허가 및 시설기준에 관한 사항은 법 제33조, 제35조, 제37조, 제39조 및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.	② ----- 법 제23조의 2, 제33조--- 제39조, 제39조의5, 제39조의19 --.
③ (생략)	③ (현행과 같음)
④ 노인복지시설을 구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내부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하며,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사무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자체운영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.	④ ----- 내부 운영 규정-----.
제8조(운영의 위탁) ① ~ ④ (생략)	제8조(운영의 위탁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
⑤ 노인복지시설을 수탁 받은 자는 시설물 사용(수도료·전기료·기타 공공요금 등을 포함 한다)에 관한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시설물 유지·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.	⑤ -----그 밖의 공공요금 등을 포함한다)-----.
제11조(변상책임과 원상회복) 수탁자 또는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의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이를 변상 또는 원상회복하여야 한다.	제11조(변상책임과 원상회복) ----- 원상 회복하여야 --.
제13조(위탁사항의 공고) ① (생략)	제13조(위탁사항의 공고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의 공고는 구 공보에 하는 것으로 한다. 다만, 필요시에는	② ----- 구보-----, ---- 필요시-----

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구 홍보매체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.

제5장 노인관계기관

제25조(보조금 지원) 구청장은 노인관계기관 및 구립노인종합복지관 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~ 4. (생략)

<신설>

5. (생략)

제28조(지도감독 등) ① (생략)

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된 예산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1. (생략)

2.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

3. ~ 6. (생략)

제29조(효의 달) 구청장은 우리의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효행을 통하여 고령화 사회에 어르신에 대한 경로효친과 효에 관한 사회적 관심 및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매년 10월을 효의 달로 정한다.

제30조(효행교육장려) ① (생략)

② 구청장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, 필요시 전통예절기관 등에 위탁하여 청소년인성 교실을 운영할 수 있다.

제33조(효도가정에 대한 지원 등) ① ~ ④ (생략)

⑤ 신청서를 받은 동장은 주민등록 등 관련공부 및 대상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한다.

⑥ 구청장은 장려금을 지급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효행 장려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지급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.

제34조(노인장수수당 지원 등) ① 구청장은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안락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인에게 노인장수수당(이하 “장수수당”이라 한다)을 지급할 수 있다.

-----.

제5장 노인관계기관 등 노인복지증진 지원

제25조(지원내용) ----- 다음 -----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5. 노인 이미용 지원

6. (현행 제5호와 같음)

제28조(지도감독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거짓 -----

3. ~ 6. (현행과 같음)

제29조(효의 달) ----- 효에 대한 -----
- 제고와 -----.

제30조(효행교육장려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필요 시 -----.

제33조(효도가정에 대한 지원 등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

⑤ ----- 관련 공부 -----.

⑥ ----- 갖추어 두고 -----.

제34조(장수축하품 지급) ① ----- 장수축하품 -----.

② 장수수당 지급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동작구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만100세 이상의 노인이다. 다만, 주민등록법에 따른 장기 출타자와 국외거주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.

③ 장수수당은 매년 30만원 이내로 하며,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.

제35조(지급방법 등) ① 장수수당은 직권조사를 통하여 지급합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장수수당 지급대상자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노인장수수당 지급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, 부양의무자 또는 신청권한을 위임받은 자가(위임장 소지자를 말한다) 신청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지체 없이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송부하고, 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대상자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한다.

③ 구청장은 장수수당을 지급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노인장수수당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지급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.

제36조(지급의 중지 및 반환)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부터 장수 및 효도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.

1. · 2. (생략)

3.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급된 사실이 발견 되었을 때

②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수령한 사람은 행위 요인이 발생한 때로부터 지급된 수당의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.

<신설>

제37조 · 제38조 (생략)

② 장수축하품 ----- 1년 -----
-----.

③ 장수축하품은 50만원 이내의 물품을 1회 지급할 수 있다.

제35조(지급방법 등) ① 장수축하품 -----
----- 장수축하품 지급대상자 ----- 장수축하품 -----
----- 자(위임장 소지자를 말한다)가 -----.

② ----- 장수축하품 -----.

③ 구청장은 장수축하품을 지급한 후 장수축하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 등을 통해 지급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.

제36조(지급의 중지 및 반환) ① ----- 장수축하품 -----
-----.

1. · 2. (현행과 같음)

3. ----- 거짓 -----

② ----- 장수축하품 상당액 -----.

제37조(노인 이미용 지원) 구청장은 지원기준일 현재 동작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노인에게 이미용비를 바우처 또는 이용권 등의 형태로 지원할 수 있으며, 지원 대상 노인의 연령 및 지원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. 다만, 시설입소자 또는 유사사업 지원 대상자는 제외할 수 있다.

제38조 · 제39조 (현행 제37조 및 제38조와 같음)

인사발령

[발령 제258호]

연번	성 명	발령 사항	현 직	
			소 속	직 급
1	이 주 만	지방행정사무관예임함 핵심정책추진단장에	핵심정책추진단	지방행정주사 (승진예정)
2	이 해 남	지방행정사무관예임함 기획재정부 기획조정과장에	기획조정과	지방행정주사 (승진예정)
3	문 나 영	지방행정사무관예임함 복지국 어르신정책과장에	어르신정책과	지방행정주사 (승진예정)
4	김 혜 경	지방행정사무관예임함 미래교육국 영유아보육과장에	영유아보육과	지방행정주사 (승진예정)
5	유 진 속	지방행정사무관예임함 미래교육국 청년청소년과장에	청년청소년과	지방행정주사 (승진예정)
6	김 준 희	지방행정사무관예임함 생활경제국 경제정책과장에	경제정책과	지방행정주사 (승진예정)
7	노 영 아	지방행정사무관예임함 생활경제국 주택지원과장에	주택지원과	지방행정주사 (승진예정)
8	이 희 열	지방행정사무관예임함 노량진제2동사무장에	노량진제2동	지방행정주사 (승진예정)
9	고 병 준	지방행정사무관예임함 사당제1동사무장에	사당제1동	지방행정주사 (승진예정)
10	이 정 아	지방행정사무관예임함 사당제2동사무장에	사당제2동	지방행정주사 (승진예정)
11	이 정 훈	지방사회복지사무관예임함 사당제5동사무장에	사당제5동	지방사회복지주사 (승진예정)
12	김 태 우	지방행정사무관예임함	동작구	지방행정주사 (승진예정)

2024. 8. 24. 字.

[발령 제259호]

연번	성 명	발령 사항	현 직	
			소 속	직 급
1	정 자 영	복직 행정자치국 주차관리과 근무를 명함	감사담당관	지방행정주사
2	이 윤 경	스페인, Comillas Pontifical University 교육훈련 파견 복귀를 명함 미래교육국 청년청소년과 근무를 명함	동작구	지방행정주사

2024. 8. 24. 字.

[발령 제260호]

□ 의원면직

연번	성 명	발령 사항	현 직	
			소 속	직 급
1	황 진 솔	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	사당제2동서	지방사회복지 서기보시보

2024. 8. 26. 字.

[발령 제261호]

연번	성 명	발령 사항	현 직	
			소 속	직 급
1	금 나 리	지방공무원법 제 63 조 제 2 항 제 4 호 규정에 따라 휴직을 명함 (2024년8월27일부터 2025년4월1일까지)	예산회계과	지방행정주사보
2	박 출	지방공무원법 제 63 조 제 1 항 제 1 호 규정에 따라 휴직을 명함 (2024년8월27일부터 2024년10월31일까지)	상도제3동	지방행정서기보

2024. 8. 27. 字.

[발령 제262호]

연번	성명	발령사항	현직	
			소속	직급
1	노지연	복직 (출산휴가·육아휴직사절예고)	보건행정과	지방보건주사보

2024. 8. 31. 字.

동
작
구
보

제
1
9
0
4
호

동
작
구

www.dongjak.go.kr

